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8,400,000	18,252,000
일반회계		567,700,000	17,031,000
특별회계		40,700,000	1,221,000
	기타특별회계	40,700,000	1,221,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37,000	22,11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329,000	219,8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7,000	1,41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27,000	33,8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1,800
	치수사업특별회계	360,000	10,8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40,000	148,2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100,000	783,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434,70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